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1일
발 의 자 : 이은주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상훈, 김태호, 송도호,
송아량, 이광호, 이승미,
이호대, 정지권, 정진철,
황인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시설보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시설설치, 예산투입 등 증가하는 실정에서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 이에 어린이 통학로 내 보행안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보행안전 시설을 표기하여 이에 대한 관리규정 또한 명시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의 명확한 명칭 및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(제7조의5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 5(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)

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,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
2.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
3. 옐로카펫
4.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
5.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
6.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 5(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)</p> <p>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,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2.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. 옐로카펫 4.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.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6.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